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율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추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11. 4.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중 “나목”을 “나목·나목의2”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나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가) 중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입원진료”로 하고, 같은 란 나)부터 라)까지를 각각 다)부터 마)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다)

[종전의 나)] 중 “이 호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을 “이 호 나목, 나목의2(치매만 해당한다)”로 한다.

나) 나목의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구분란 중 “나목2)”를 “나목의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가) 중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입원진료”로 하고, 같은 란 나)부터 라)까지를 각각 다)부터 마)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다)[종전의 나)] 중 “이 호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을 “이 호 나목, 나목의2(치매만 해당한다)”로 한다.

나) 나목의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가) 중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입원진료”로 하고, 같은 란 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며, 같은 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다)[종전의 나)] 중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을 “나목, 나목의2(치매만 해당한다)”로 한다.

나) 나목의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치매는”을 “나목의2(치매는”으로, “100분의 10, 나목2)”를 “100분의 7, 나목의2”로 한다.

별표 2 제3호거목 본문 중 “나목”을 “나목, 나목의2”로 한다.

별표 2 제3호러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나목”을 “나목, 나목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나목, 나목의2,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거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